게시판 bulletin board

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

우리협회는 지난 9월 6일에 치러졌던 건축사자격시험의 결과를 발표했다.
이번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는 응시생 총 3천8백74명중 9백75명(25.2%)으로 제출된 서류를 통해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 및 신원조회를 받게 된다.
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6일로 각 시·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.

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.

1998년 10월 9일
대한건축사협회 회장

구 분	건 축 사 자 격 시 험 및 특 별 전 형 시 험
1. 합격예정자 명 단	○ 별 첨 ※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 및 신원조회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함.
2. 제출서류 접 수	가. 제출서류 접수기간: 1998. 10. 19~10. 22(08:00~18:00) 나. 제출서류 접 수 처: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·도건축사회 ○ 서울건축사회: (02) 581-5715~8 ○ 대구건축사회: (053) 753-8980~5 ○ 광주건축사회: (062) 521-0025~6 ○ 울산건축사회: (052) 266-5651 ○ 강원건축사회: (0361) 54-2442 ○ 충남건축사회: (042) 256-4088 ○ 전남건축사회: (062) 365-9944 ○ 경남건축사회: (0551) 46-4530~3 ○ 부산건축사회: (051) 633-6677 ○ 인천건축사회: (032) 437-3381~4 ○ 대전건축사회: (042) 485-2813~7 ○ 경기건축사회: (0331) 47-6129~31 ○ 충북건축사회: (0431)223-3084~6 ○ 전북건축사회: (0652)251-6040~7 ○ 경북건축사회: (053) 744-7800~2 ○ 제주건축사회: (064) 52-3248
3. 제출서류	(1) 응시표사본 1부 (2) 주민등록초본 1부: 병역사항(군별, 병과, 복무기간 등)이 명시된 것. (3) 호적초본 1부: 본적, 호주가 명시된 것. (4) 졸업증명서 1부: 전공학과, 졸업일자, 발행번호, 발행일자가 명시된 것. (5) 경력증명서 1 부: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('98.9.5)까지로 하며,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. ※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, 담당업무,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,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, 전화번호, 대표자 성명이 기재·날인되어 있어야 하며,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업체장(기관장)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. • 건축사사무소 경력: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·도건축사회 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• 건설업체, 엔지니어링활동주체, 주택건설사업체 등의 경력: 대표자 명의의 경력 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 면허증 등록증 사본(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안함) • 공무원: 부서, 직종, 직급,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• 대학원 학위과정: 전공학과, 학위 및 학위수여일자가 명시된 학위 수여 증명서 • 시간강사 경력: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된 경력 증명서 • 기타 소정의 경력: 해당 경력증명서 (6)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, 건축분야기술사 및 기사1급 자격증, 외국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(원본지참) (7) 컬러사진(반명함판) 2 매: 사진 뒷면에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 (8) 우편봉투 1 매: 수취인 주소, 성명, 우편번호 기재(우표 미부착) (9) 2급건축사면허증 및 수첩: 특별전형시험 합격자
4. 최종합격자 발 표	가. 최종합격자 발표: 1998. 12. 16.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. 면허증 및 면허수첩 교부일자: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고
5. 기타사항	○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 ○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,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○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배부한 응시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시험성적 열람은 98. 10. 9. ~ 10. 15. 까지 주민등록증(여타증명서)을 지참하여 본 협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기간 이후에는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.(단, 우편문의는 열람기간내의 우편소인분에 한함) ○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실(581-5711~4)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 (504-9139)로 문의 바랍니다.